

【 4 】 양주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8. 3. 21.

제출자 : 양 주 군 수

□ 제안이유

- 종전에는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하여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97. 12. 31일 법제업무운영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15602호) 되면서 법제업무운영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었기 우리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입법예고 대상을 주민이해 관련, 경제적 부담 관련, 일상생활 관련, 공공복지 관련, 기타 예고함이 주민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중요분야의 사항 등으로 규정함(안 제2조)
- 예고의 예외대상으로 자치법규의 제·개정이 긴급을 요하거나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한 경우 상위법령 또는 조례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하고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규정함(안 제3조)
- 예고방법은 군보 게재를 원칙으로 하고 예고기간을 20일로 규정함.
(안 제4조, 제6조)
- 예고한 조례안 등에 관하여 공개 청문을 행하고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9조)

양주군조례 제 호

양주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법체업무운영규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주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 생활에 있어서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할 때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사전 예고하여 주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예고 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조례·규칙으로서 주민의 일상 생활과 관련되는 중요한 자치 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폐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주관 실과소장(이하 “주관과장”이라한다)은 이를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1. 주민 이해관련 자치법규
2. 주민의 경제적 부담관련 자치법규
3.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중요분야의 자치법규
4. 주민의 공공복지 증진과 관련된 자치법규
5. 사전 예고함이 주민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타 주요조례

② 내무과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례안 또는 규칙안(이하 “조례안등”이라 한다)으로서 예고를 하지 아니한 조례안등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조례안 등의 주관과장에 대하여 예고를 권고하거나 협의를 거쳐 직접 예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례는 “별표”와 같다.

제 3 조(예고의 예외) 예고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해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상위법령등 또는 조례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하고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제 4 조(예고방법)** ①예고를 하는 경우 주관과장은 예고문안을 작성하여 내무과장 심사후 군수결재를 받아 시행하고 사본1부를 내무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예고문은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등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항목별로 군 보의 게재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신문·계시판·유선방송·컴퓨터 통신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예고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주관과장은 예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안등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 이해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또는 그 분야 전문가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 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반드시 통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예고문은 조례안등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주민이 알기 쉽게 “별지” 의 예고문 작성례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조례안등 의 초안을 함께 게재할 수 있다.

제 5 조(관계기관과 협조) 조례안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하여 도 및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과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협의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제출기간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입법예고와 병행할 수 있다.

제 6 조(예고기간) ①예고기간은 예고시에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이상 으로 한다.

- 제 7 조(의견제출)** ①이해관계인은 누구든지 예고된 조례안 등에 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간, 제출처 기타 의견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조례안 등의 입법예고시에 함께 공고한다.

제 8 조(의견의 분석·처리) ①주관과장은 의견제출기간 안에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타당성을 검토한후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조례안 등을 보완하여야 한다.

②주관과장이 내무과장에게 조례안등의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례안등의 기타 참고사항란에 예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결과 사본 1부를 제출한다.

제 9 조(공청회) ①주관과장은 예고한 조례안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입법예 고시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제목·일시 및 장소
2. 공청회 내용
3. 발표자에 관한 사항

4.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기타 필요한 사항

③ 공청회에서 발표할 자는 공청회 5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발표자를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신청인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표자 선정에 있어서는 당해 공청회 주요 내용에 관하여 찬성 반대의 의견이 고르게 진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조례안등의 주관과장은 공청회의 주재자 (이하 “주재자” 라 한다)가 된다. 다만, 당해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있고 동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자로 할 수 있다.

⑤ 주재자는 공청회에 있어서 참여자의 발표가 있기전에 공청회내용, 발표순서 · 시간 · 발표자간 질문, 발표자와 주재관간의 질문방법등 운영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⑥ 공청회에 있어서 발표자는 공청회내용과 직접 관계된 사항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제8조의 규정은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 10 조(예고사항의 확대실시) 제2조의 예고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수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관련되는 사항, 주민에게 알리는것이 시책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예고함이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현실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 규정에 준하여 예고할 수 있다.

제 11 조(입법예고 경비확보) 주관과장은 조례안 등 입법 예고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조례안 필수예고대상 (제2조 제3항 관련)

관련 분야명	자 치 법 규 명
주민이해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관련 자치법규 ◦ 주택개량재개발사업관련자치법규 ◦ 취락지역개발관련자치법규 ◦ 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자치법규 ◦ 토지구획정리사업분담금부과징수관련자치법규
주민의 경제적 부담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관련자치법규 ◦ 세증명등수수료징수관련자치법규 ◦ 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관련자치법규 ◦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해자부담금관련자치법규 ◦ 도로점용료징수관련자치법규 ◦ 공원, 자연발생유원지, 국민관광지등입장료및사용료관련자치법규 ◦ 묘지, 화장장등사용료관련자치법규 ◦ 폐기물의수수료등의부과·징수관련자치법규 ◦ 농지개량사업부담금및목적외사용료등징수관련 자치법규 ◦ 상수도사업비지방재관련자치법규 ◦ 농어촌도로점용료관련자치법규
주민의 일상생활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관리관련자치법규 ◦ 수도급수관련자치법규 ◦ 하수도사용관련자치법규 ◦ 오수·분뇨및축산폐수관련자치법규 ◦ 주차장관련자치법규 ◦ 가축시장사용관련자치법규 ◦ 시장사용관련자치법규
주민의 공공복지 증진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관련자치법규 ◦ 연료대책자금융자관련자치법규 ◦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련자치법규 ◦ 장학금지급관련자치법규 ◦ 복지회관·여성회관설치관련자치법규 ◦ 군민회관·도서관설치관련자치법규
기타주요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상관련자치법규 ◦ 포상관련자치법규 ◦ 향토유적관련자치법규 ◦ 기금조성관련자치법규 ◦ 공기업단지조성및분양관련자치법규 ◦ 보육시설위탁운영관련자치법규

(별지)조례안 예고문 (예시) (제4조 제4항관련)

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양주군 공고 제 호

○○○조례를 제정(또는 개정,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군 수

1. 조례제명 : ○○○조례안

2. 제정(또는 개정·폐정)취지

3. 주요내용

(1안)

가. ○○○에 대하여

○○○이 ○○○하므로 ○○○를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임.

나. ○○○에 대하여(제○○조)

○○○한 현행제도는 ○○○하므로 이를 ○○○로 개정하려는 것임.

다. ○○○에 대하여(제○○조의 폐지)

○○○한 현행제도는 ○○○하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 필요한 경우 조례안 전문을 첨부(별첨)한다.

(2안)

항 목	현 행	개정안	취 지	비 고
가.(제○○조)	
나.(제○○조)	
다.(제○○조)	

※ 필요한 경우 조례안 전문을 첨부(별첨)한다.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를 세워서 작성한 것)를 군수(참 조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 ○○○○)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5. 공청회 개최계획(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일시 :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나. 장소 : ○○○○, ○○○○

- 다. 공청회내용 : 1)
2)
3)

라. 발표자에 관한 사항 : ○○인

마. 발표신청 : 공청사항에 대하여 공청회 당일 의견을 발표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년 ○○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군수(참조 :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우리군에서 발표하실 분을 선정하여 통지하여 드립니다.

1) 공청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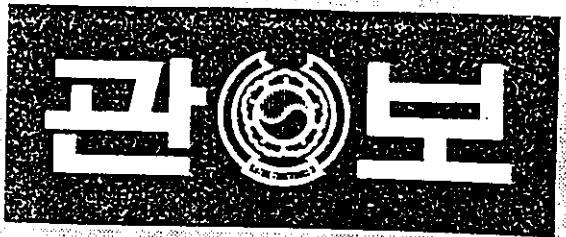
(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및 자신의 이력을 적은 자기 소개서(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발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명, 단체에서의 직위를 포함합니다.)

대한민국정부

관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	---------



제 13796호 1997. 12. 31. (수)

법 률

○ 법률 제5,482호(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5
- 법률 제5,482호부칙에의하여개정되는법률	
· 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관한법률	
· 군인보험법 · 군인연금법	
○ 법률 제5,483호(마약법증개정법률).....	11
○ 법률 제5,484호(대마관리법증개정법률).....	14
○ 법률 제5,485호(항정신성의약품관리법증개정법률).....	16
○ 법률 제5,486호(정신보건법개정법률).....	20
○ 법률 제5,487호(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34

대 통령령

○ 대통령령 제15,558호(특별소비세법시행령증개정령).....	39
○ 대통령령 제15,559호(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증개정령).....	40
○ 대통령령 제15,560호(관세법시행령증개정령).....	41
○ 대통령령 제15,561호(관세사법시행령증개정령).....	44
○ 대통령령 제15,562호(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증개정령).....	45
- 대통령령 제15,562호부칙에의하여개정되는대통령령	
· 능이춘록별세법시행령	
○ 대통령령 제15,563호(부가가치세법시행령증개정령).....	65
○ 대통령령 제15,564호(법인세법시행령증개정령).....	69
○ 대통령령 제15,565호(소득세법시행령증개정령).....	76
○ 대통령령 제15,566호(관세법제12조의2의규정에의한조).....	85

(이면 계속)

회 람								
--------	--	--	--	--	--	--	--	--

발행총무처 (편집 ☎ 720-4331 보급 ☎ 727-0611)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 110-760)

1201-4A 1995. 10. 12. 출판
190×268 신문형지 18.8 g/m²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1
 ○ 대통령령 제15,583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증개정령) 171
 ○ 대통령령 제15,584호(자하생 활공간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176
 - 대통령령 제15,584호부칙에 의하여 개정되는 대통령령
 · 공중위생법시행령
 ○ 대통령령 제15,585호(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증개정령) 178
 ○ 대통령령 제15,586호(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민권 188
 ○ 대통령령 제15,587호(고용보험법 시행령증개정령) 204
 ○ 대통령령 제15,588호(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1
 ○ 대통령령 제15,589호(산업지해보상보험법 시행령증개정령) 216
 ○ 대통령령 제15,590호(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증개정령) 220
 ○ 대통령령 제15,591호(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시행령증개정령) 221
 ○ 대통령령 제15,592호(한국어업기술훈련소법 시행령개정령) 222
 - 대통령령 제15,592호부칙에 의하여 개정되는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22
 · 어항법시행령
 ·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222
 ·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
 ○ 대통령령 제15,593호(국가정보대학원 설치법시행령) 224
 - 대통령령 제15,593호부칙에 의하여 폐지 되는 대통령령
 · 국가정보연수원 설치령
 ○ 대통령령 제15,594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증개정령) 227
 ○ 대통령령 제15,595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증개정령) 229
 ○ 대통령령 제15,596호(공직자윤리법 시행령증개정령) 229
 ○ 대통령령 제15,597호(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5
 - 대통령령 제15,597호부칙에 의하여 개정되는 대통령령
 ·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시행령 235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사무처 설치령
 ○ 대통령령 제15,598호(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등 의 개정령) 253
 ○ 대통령령 제15,599호(공무원 임용령증개정령) 274
 - 대통령령 제15,599호부칙에 의하여 개정되는 대통령령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제15,600호(전문직공무원규정증개정령) 278
 ○ 대통령령 제15,601호(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증개정령) 279
 ○ 대통령령 제15,602호(법제업무운영규정개정령) 280
 ○ 대통령령 제15,603호(고령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 288
 - 대통령령 제15,603호부칙에 의하여 개정되는 대통령령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입찰공고

- 조달청내자공고 제1997-1,234호 · (조달물자(내자) 구매 입찰공고) 296
 ○ 조달청내자공고 제1997-1,235호 297
 ○ 조달청 의자공고 제1997-1,236호 (조달물자(내자) 구매 입찰공고) 297
 ○ 조달청 의자공고 제1997-1,255호 · 제1997-1,257호 (구매 입찰공고) 298
 ○ 조달청 광주지청 공고 제1997-76호 (조달물자(내자) 구매 입찰공고) 300
 ○ 철도청 중앙보급사무소 공고 제1997-247호 ('98 단가 계약 입찰공고) 301

齡이 61歳까지로 規定되어 있으나 總務處例規인 別定職公務員의 任用資格基準에 의하여 最長勤續年數를 7年으로 제한하여 운영함에 따라 사실상 50歳 전후에 退職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그 勤續年數制度를 폐지하는 대신 勤務上限年齡을 現行 61歳에서 55歳로 調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제업무운영규정개정령을 아래 공포한다.

대통령 김영삼

1997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고건

국무위원
총무처장관 심우영

④대통령령 제15,602호

법제업무운영규정개정령

법제업무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기타 정부의 법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효율적인 국가정책수행을 도모하며 나이가 국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법령"이라 한은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제3조(입법활동의 기준) 모든 입법활동은 헌법과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입법에 관련된 정부기관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제2장 정부입법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입법계획의 총괄·조정) 법제처장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법령안의 입법계획을 총괄·조정한다.

제5조(부처입법계획의 수립) ①법제처장은 매년 각 중앙행정기관이 당해 연도에 추진할 법령안 입법계획의 작성방법·제출시기 기타 협조사항 등을 마련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법령안의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내용에 따라 당해 연도 주요업무계획 등의 추진에 필요한 법령안의 연간 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부처입법계획의 내용) ①제5조제2항의 입법계획에는 법령안별로 입법의 필요성, 내용요지, 추진일정,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법의 필요성에는 종전의 제도운영실태, 입법추진배경, 입법으로 일어지는 효과와 관련단체 등의 입법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일정에는 입안시기, 관계기관과의 협의 계획, 입법예고 및 공청회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 법제처 제출시기, 국회 제출시기와 시행예정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부처입법계획의 수립시 유의사항)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기간을 두도록 하고 법제처 및 국회의 충분한 법령안 심의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률안의 국회제출은 인증 고루 안내되도록 하고,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정기국회에서, 그밖의 법률안의 경우에는 가급적 임시국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8조(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등)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입법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부·처에 소속된 기관의 장은 그 소속 원·부·처의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법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종합하여 당해 연도에 정부에서 추진할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되, 정부입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입법계획중 입법추진일정, 중복·상충되는 사항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법제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정부입법계획을 국무 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정부입법계획의 시행·수정)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정부입법계획에 따라 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법제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의 입법추진을 철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법률의 입법을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정부입법계획상 임시국회 제출예정 법률안을 정기국회 제출예정 법률안으로 일정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법제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정요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정하고 그 결과를 당해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내용으로 정부입법계획을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법률안의 입법추진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정부입법추진상황의 국무회의 보고 등) ① 법제처장은 정부입법

개회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입법개회를 수정한 때에는 수정된 정부입법개회의 내용 또는 정부입법추진상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②법제처장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된 정부입법개회의 내용을 분기별로 관보에 고시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3장 입법과정에서의 협조

제11조(입법과정에서의 기관간 협조) ①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안의 입안초기단계부터 관계기관의 장(법령에 의한 협의대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법령안을 입안한 때에는 당해 법령안의 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령안에 대한 의견회신기간은 10일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의견회신기간을 10일미만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의견회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및 법제처장은 법령안의 입안과 심사 및 공포 등 입법과정 전반에 걸쳐 정부입법에 관한 협의·의견조정 기타 정부기관간에 효율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법률안 국회심의과정의 협조 등) ①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및

법제처장은 법률안의 국회심의시 그 심의과정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상호협조하여 정부의 입법정책이 일관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국회에서 신의중인 법률안의 충분한 검토와 효율적인 입법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자료를 제공하는 등 법률안의 국회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정부이송 법률안의 통보) 법제처장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이송되어 온 즉시 관계 원·부·처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국민의 입법의견 수렴

제14조(법령안 입법예고) ①행정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대상 법령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률안
2.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에 관한 법령안
 - 가. 학사제도
 - 나. 공중위생
 - 다. 환경보전
 - 라. 농지 기타 토지제도
 - 마.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 바. 건축

사. 도로교통

아. 행정심판

자. 국가시험

차. 정보화관련 제도

카. 기타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나수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

②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대상 법령안 외의 법령안에 대하여도 입법예고할 수 있다.

③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에 관하여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하여야 하며, 원·부·처에 소속된 기관의 장은 그 소속 원·부·처의 장의 승인을 얻어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④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20일미만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총무처장관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입법예고를 위한 간보개재 의견을 받은 때에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제11조제2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법예고의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5조(예고방법) ①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관보 외에도 신문, 키프터통신,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당해 법령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기타의 자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③법제처장은 법령안의 내용이 국가의 중요정책사항이나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에게 이를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간신문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예고할 수 있다.

제16조(예고사항의 통보)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의 내용(당해 법령안 초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그 초안을 포함한다)을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법령안의 복사비용) 행정절차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령안 복사에 따른 비용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제출의견의 처리) ①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법령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

형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법령안 또는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
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입법의견의 제출) ① 누구든지 법령의 정비·개선에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법제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입법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대해 입법의견 및 개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검
토한 후 그 결과를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개회를 수립하고 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법제처장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검토결과가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자치법규안 입법예고) ① 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은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것 외에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조례
로 정한다.

제5장 법령안 등의 심사

제21조(법령안 등의 심사요청) ① 각 인·부·처의 장은 법령안에 관하
여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행정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장에게 당

해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외부부장관은 조약안에 관하여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당해 조약안의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
하여야 한다.

③ 법제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
의를 거치지 아니한 법령안 또는 조약안이나 입법예고절차를 거치
지 아니한 법령안이 심사요청된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법령안 또는 조약안의 경우에는 이를 반리하지 아니
하고 사전검토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검토를 하는 경우 당해 기관의
장은 사전검토대상 법령안 또는 조약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 또는 입법예고 등의 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자체없이 그 결과
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제처장은 정부입법개회에 포함되지 아니한 법률안이 제9조제2
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입법개회의 수정절차를 거치지 아
니하고 심사요청된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
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이를 반리하지 아니하고 사전검토를 할 수
있다.

제22조(하위법령의 직기정비)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공포된 법률
의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제정·개정 등이 필
요한 경우 당해 법률의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한 그 법률의 시행일 30일전까지 법제처장에게 당해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법제처장은 하위법령의 적기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하위법령의 정비상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제23조(대통령훈령안 등의 심사)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훈령 또는 국무총리훈령의 발령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제처장에게 당해 훈령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법제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훈령안 또는 국무총리 훈령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훈령안이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훈령의 발령을 위하여 총무처장에게 관보개체를 의뢰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처장이 통보한 심사결과공문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장 법령 등의 정비·개선

제24조(법령정비의 추진) ①법제처장은 현행 법령에 대한 재검토·정비가 필요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정비의 대상·기준·절차·방법 기타 협조사항 등을 마련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정 또는 개정된 후 오랜 기간동안 법령의 주요 부분이 실질적

으로 수정·보완되지 아니하여 해당 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내외의 어려운 변화에 대응하여 중요한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분야에 걸쳐 법령의 재검토·정비가 필요한 경우

4. 기타 현행법령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상법령을 검토한 후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관법령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법제처장에게 통보하고 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법제처장은 법령 등의 정비·개선 기타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처 주관으로 각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학계·민간단체 기타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5조(훈령·예규등의 적법성 확보) ①각급 행정기관의 훈령·예규·고시(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령의 시행과 직접 관련하여 발령하는 지시·통첩 등을 포함하며, 이하 "훈령·예규등"이라 한다)는 그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적합하게 법령·유지·관리되어야 한다.

- ②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회에 걸쳐 매반기에 법령한 훈령·예규등을 당해 반기 종료후 10일이내에 법제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법 제9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 송부하여야 하는 훈령·예규등은 발령후 7일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③법제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훈령·예규등을 검토하고 법령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훈령·예규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또는 불합리한 사항을 정한 훈령·예규등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의견을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의견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당해 훈령·예규등에 반영하고 그 처리결과를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법령해석

- 제26조(법령해석의 요청) ①각 원·부·처의 장은 행정운영의 적법성 및 타당성 보장을 위하여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해석임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각 원·부·처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에 관한 정부견해의 동일을 기하고 일관성있는 법집행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실·국간의 의견을 종합한 후 최종적으로 결정된 의견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부처 소관법령의 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 소관부처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한다.

- 제27조(법령해석시 유의사항) ①법령해석기관은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 당해 법령의 입법배경·위치 및 운영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문제가 제기된 배경과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에 신중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 ②법령해석기관은 법령의 운영·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 한 신속히 회신하여야 한다.

제8장 법령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지원

- 제28조(법무담당공무원의 인사관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입법·집행 등 법령운영에 있어서의 적법·타당성을 확보하고 법제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법무담당공무원의 보직기준 등 필요한 인사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29조(법제업무지원)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운영에 필요한 법제자료를 제공하고, 입법추진을 하고자 하는 법령안에 대한 사전검토 및 자문에 용하는 등 필요한 법제지원을 한다.

부 칙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法制業務運營規程 改正理由

政府立法計劃의 빈번한修正을 방지하고 法律案의 定期國會 집중방지라는 政府立法計劃制度 본래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

이 政府立法計劃을 수립한 경우 國務會議에 보고하는 외에 官報에도 告示하도록 하고, 臨時國會에 제출예정인 法律案을 定期國會에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政府立法計劃을 修正하도록 하는 등 政府立法計劃의 수립 및 수정절차를 개선하고,

行政節次法의 制定(1998. 1. 1. 施行)으로 인하여 立法豫告關聯規定을 同法에서 規定함에 따라 同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整備·보완하는 한편,

現行 規定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未備點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國家政策遂行과 원활한 法制業務의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主要骨子

가. 法制處長은 政府立法計劃을 國務會議에 보고한 후에는 그 내용을 官報에 告示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國民에게 알리도록 함(令 第8條第3項).

나. 法令案 主管機關의 長은 政府立法計劃이 확정된 후에 計劃된立法推進의 撤回, 세로운 法律의立法推進,立法推進日程의 变경 등의 사정으로 政府立法計劃을 变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法制處長에게 政府立法計劃의 修正을 요청하도록 함(令 第9條第2項).

다. 法制處長은 政府立法計劃을 修正하고 關係機關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修正된 政府立法計劃의 내용을 國務會議에 보고할 수 있으며, 수정된 立法計劃의 내용을 分期別로 官報에 告示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國民에게 알리도록 함(令 第10條).

라. 法律案은 원칙적으로 모두 立法豫告하도록 하고, 總務處長官은 法令案 主管機關의 長으로부터 立法豫告를 위한 官報개재의뢰를 받은 때에는 關係機關과의 協議期間 및 立法豫告期間의 단축에 관한 法制處長과의 協議여부를 확인한 후 立法豫告內容을 官報에 게재하도록 함(令 第14條).

마. 行政節次法의 制定(1998. 1. 1. 施行)으로 인하여 立法豫告關聯規定이 同法에 規定됨에 따라 同法의 規定과 중복되는 規定을 整備함(令 第15條 내지 第19條).

바. 法制處長은 關係機關과의 協議 및 立法豫告節次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政府立法計劃의 修正節次를 거치지 아니하고 審查依賴된 法令案에 대하여는 이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되, 긴급을 요하는 法令案의 경우에는 이를 반려하지 아니하고 사전검토할 수 있도록 함(令 第21條第3項 내지 第5項).

사. 法制處職制상 法制處의 機能에 포함되어 있는 大統領訓令案

및 國務總理訓令案의 事前審査에 관한 規定을 이 規程에 반영함(令 第23條).

아. 國會法의 改正(1997. 1. 13. 施行)으로 인하여 각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法律의 위임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訓令·例規 등을 발령한 날부터 7日이내에 이를 國會에 송부하게 됨에 따라 法律의 위임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訓令·例規등은 발령한 날부터 7日이내에 法制處長에게 송부하도록 함(令 第25條第2項).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영삼

1997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고건
국무위원 심우영
총무처장관

① 대통령령 제15,603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의 신청)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하거나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관할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확인의 요청 등) ①관할청장등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원남전참전사실확인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총리령이 정하는 원남전참전사실확인요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자
2.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자
3.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신청을 한 자의 경우에는 당해 사망자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원남전참전사실확인통보서를 관할청장등에게 자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③관할청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원남전참전사실확인대상자가 원남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